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예방 관리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I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소개

1. 사회서비스 개요

사회서비스란?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e-voucher)란?

사회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카드 및 온라인 쿠폰 형태로 구현한 증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란?

바우처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신청, 이용, 결제, 비용지급, 정산 등의 전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부정수급탐지시스템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바우처의 다양한 결제 정보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부정 개연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II. 부정수급 관련 법령 및 언론보도

1. 부정수급 관련 법령(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5항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의 3~5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1. 부정수급 관련 법령(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2항 각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1. 부정수급 관련 법령(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7조(벌칙)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9조(과태료) 제1항 제5호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부정수급 관련 언론 보도(1)

[노컷뉴스 2023.6.12.] “부산서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또 적발…혈세 '줄줄'”

활동지원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동안 활동지원금 7000만원 상당을, 다른 지원사 B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우처카드를 자신들이 챙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왔다.

3년 넘게 이어진 부정수급은 지난 1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정보원)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발각됐고, 사회정보원과 사하구의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사하구는 부정수급액 일부를 환수하고, 소속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0일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2. 부정수급 관련 언론 보도(2)

[중앙일보 2023.7.13.] “[단독]하원시간 속이고, 직불금 허위신청…보조금 부정수급 꼼수”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부당하게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시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속 **활동지원사인 B씨와 수급자인 장애인 C씨는** **지난 3월~5월 바우처 카드를 허위 결제해 활동지원 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검에 넘겨졌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에 송치된 사건을 포함해 각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관련 고발·수사 의뢰 사건 36건(60명)을 수사 중이다.

Ⅲ.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1.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프로세스



3. 이상결제 모니터링(1)

사회서비스 사업별 주요 이상결제 유형 (1/2)

(대상사업)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② 장애인활동지원 ③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④ 가사간병방문지원 ⑤ 발달재활서비스 ⑥ 언어발달지원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번호	이상결제	내용	대상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일괄결제	과거 여러건의 서비스를 한번에 소급하여 결제	○	○	○	○	○	○	○
2	중복결제	서비스 중,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를 소급하여 결제		○	○	○			
3	심야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심야시간에 결제	○	○	○	○	○	○	○
4	연속결제	1일 2명 이상 서비스 시 결제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		○		○			○
5	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						○
6	휴일결제	평일 서비스 원칙인 바우처의 공휴일 결제 발생 시			○				
7	단가위반결제	그룹형 서비스의 복수 할인단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	○	

3. 이상결제 모니터링(2)

사회서비스 사업별 주요 이상결제 유형 (2/2)

번호	이상결제	내용	대상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동일단가와외 결제	신고한 동일 서비스 단가를 위반하여 결제					○	○	
9	서비스 대상자격 위반	서비스 대상 연령을 초과한 이용자의 바우처 결제					○	○	
10	제공인력 자격 위반	미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격 발급일자 이전에 결제한 경우				○			
11	학교수업시간 중 결제	이용자의 학교 수업시간 중 결제한 경우	○	○		○	○	○	
12	해외출국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해외 체류 중 결제	○	○	○	○	○	○	○
13	사망의심자	사망 또는 사망이 추정 되는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결제가 발생한 경우	○	○	○	○	○	○	○
14	장기입원자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한 이용자 및 입원기간 내 제공인력의 결제가 발생한 경우		○					
15	장기요양중복청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이용·제공한 경우		○		○			
16	시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동시에 이용·제공한 경우		○					

Ⅳ.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의 이해

1.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정의 및 특성)

부정수급이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의도적 기망. 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 ② 비의도적 행정오류, 수급자 사업요건 인지 미흡 등으로 보조금을 과오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특성

◆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이나, 그 특성이 상이

① (직접적 피해자 부존재) 사기·횡령은 직접적 피해자가 있어 범죄가 드러나는 반면,

부정수급은 ‘숨은 범죄’의 특성을 보임

② (적발이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 점검, 수사기관 단속의 유기적 연계 없이는 적발 곤란

③ (범죄라는 인식 부족) 국민들이 일반범죄는 썩으로 인식하나, 부정수급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

1.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환경적 요인)

이용자 및 제공인력 카드 소지

- 2시간 30분 서비스 후 15분 지연 결제하여 1시간 부당이득
- 서비스 없이 허위결제 및 바우처 급여 분취
- 제공인력 출퇴근 시간 포함 초과결제
- 이용자 없는 집에서 가사지원

상대방 카드 소지로 언제 어디서든 부정수급 가능
제일 기본이 되는 원칙만 지키더라도 대부분의 부정수급 예방

이용자 사정 및 동의에 따라 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이 소지한다고 해도
서비스 종료 시 반납 해야함(일시소지)

1.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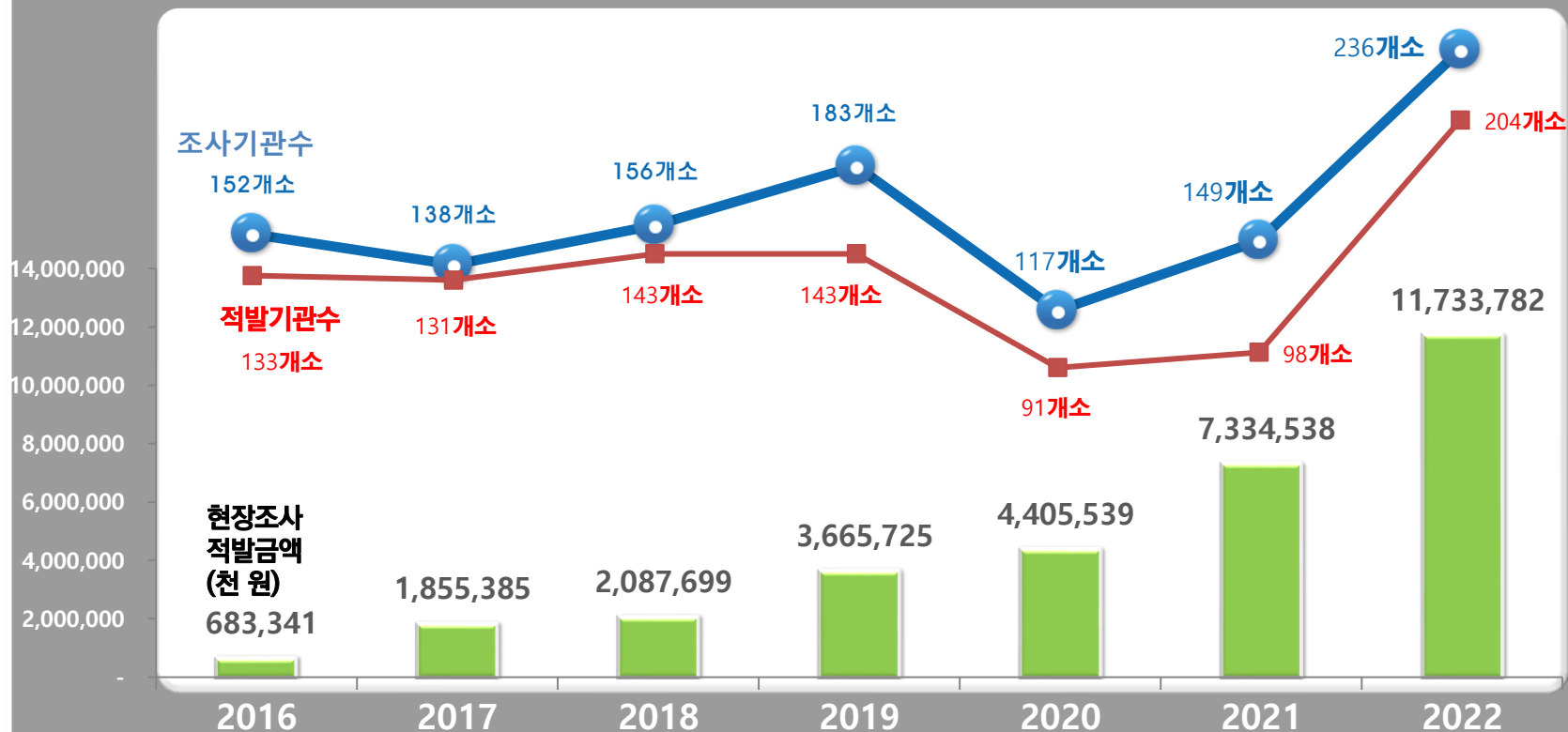
바우처를 현금성 급여로 여기는 인식

- 바우처는 복지서비스 이용권이므로 이용이 필요 없어 남은 바우처는 반납해야 하나 허위결제 후 급여 분취
- 본인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소위 '바우처깡'
- 이용자와 합의하면 바우처 이용 원칙은 무시하는 경향

‘내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용자가 초과로 결제하라고 했어’
바우처 급여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닌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원칙 반드시 준수!

1.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연도별 현장조사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V. 부정수급 적발사례별 관리방안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제공인력의 이용자 바우처 카드 소지

(문제점) 내비게이션 등으로 이동거리 소요시간 계산 시 수분 내 이동 가능하나 엘리베이터 대기, 횡단보도, 카드 수령 및 결제 행위 등 소요시간 고려 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결제 텀

모니터링 방법 1

다수 이용자와 계약한 제공 인력의 A이용자 서비스 종료 시간부터 B이용자 서비스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택 간 거리를 측정하여 이동 소요시간 확인

모니터링 방법 2

서비스 제공 후 실수로 다른 이용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
→ 승인취소 시간대와 겹치는 다른 이용자 결제 내역 확인

모니터링 방법 3

서비스 정상 결제 후 수분 내 타 이용자의 소금결제 발생 여부 확인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문제점) 바우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이용자가 확인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하나, 이용자가 출근 및 등교 후 제공인력 홀로 집에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방법

직장인 또는 학생 이용자의 근로 및 수업 시간 중 결제내역 확인

타 제공인력 대비 잦은 소급결제

(문제점) 타 제공인력은 단말기 오류 등이 대량 발생하지 않는 정상결제 시점에 단말기 오류 등을 사유로 일괄 소급결제

모니터링 방법

서비스 정상 결제 후 수분 내 타 이용자의 소급 결제 발생 여부 확인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교통비 대신 바우처 초과결제

(문제점) 제공인력 자차로 출퇴근 및 통학 지원을 하는 경우 교통지원금 명목으로 일부 초과 결제 발생

모니터링 방법

출퇴근 및 통학 이용자의 경우 이동 소요시간 대비 과도한 바우처 결제 시간 여부 확인

24시간 서비스 이용자의 정상 서비스 제공여부

(문제점) 심야 서비스 간 수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상태 모니터링 없이 동반 수면 시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불인정

모니터링 방법

24시간 서비스 이용자의 제공인력 A, B, C의 서비스 시간대가 오전~오후 A, 오후~밤 B, 밤~오전 C 등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 실제 서비스 여부 확인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단순 대기를 서비스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결제

(문제점)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단순 대기 시간은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평소 생활패턴을 파악하고 서비스 중 다수의 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시간대에 실제 서비스 여부 확인

이용자가 동일 질병으로 병원 입원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6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서비스 중지

(문제점) 해당 사유에 따른 서비스 중지 신고는 이용자(보호자) 및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사항임

모니터링 방법

해당 사실 발생 시 이용자(보호자) 및 제공인력이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지속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 가족 간 교차서비스

(문제점) 가족 간 서비스(이용자-제공인력 매칭) 불가능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 보호자인 제공인력 간 교차하여 매칭 요청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실제 계약된 제공인력의 서비스 여부 확인

학생 이용자의 통학 지원 후 초과결제 및 수업시간 중 결제

(문제점) 학교장 승인서 없이 제공인력이 학교 내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

모니터링 방법

학생 이용자의 수업시간(9시~16시 등) 중 바우처 결제 발생 여부 확인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제공인력 보수교육 간 서비스 허위결제

(문제점) 보수 교육 간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능

모니터링 방법

교육 전 서비스와 병행 불가능을 안내하고 교육 참석자의 교육 시간대 결제 여부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로 생업지원

(문제점) 직장인 이용자의 근무지에서 식사 및 이동 지원 등 활동지원 외 이용자 본연의 근로 활동(생업)을 지원할 수 없음. 이용자의 생업은 근로지원인제도 이용

모니터링 방법

직장인 이용자의 근무시간(09시~17시 등) 중 바우처 결제 여부 확인하고 근무시간 중 서비스 내역 확인

1. 부정 사용 징후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점) 굳이 타 지역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전 제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 다수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에게 타지역 제공기관 이용 사유 및 이전 계약 제공기관 등 확인
하고 불미스러운 경력 시 수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사실혼 관계 간 바우처 매칭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격 및 바우처 이용자격 확보를 위해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
사실혼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와 제공인력 동거 등 사실혼 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 가정
방문을 통해 결혼사진 게시여부, 주변 증인 등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
이라 인정할 만한 사실 확인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1)

허위결제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로 결제

사 례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A는 평일에 4시간씩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님
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월요일에 8시간 서비스 후
4시간만 결제하고 화요일은 서비스 없이 자택에서 4시간 결제 하였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바우처 카드 소지 및 화요일 4시간 허위결제로 부정수급 환수 조치

중점관리

1.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및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경우라도 서비스 종료 후
반납해야 함(서비스 중에만 소지 가능)
2. 부정수급의 기준은 거짓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제 서비스가 없었던 화요일 결제는
부정수급에 해당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2)

사 례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A는 1주일 간 해외여행을 가면서 제공인력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용자 바우처 카드는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며 본인이 없는 동안 대청소, 이불 빨래 등을 요청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시간 동안 이용자 1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이용자가 서비스 시간 확인 후 결제해야 함

대청소, 이불빨래 등 일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가사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이용자 없이 제공한 경우 바우처 서비스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한 바우처 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중점관리

1. 이용자 요청에 의하더라도 대면 없이 제공되는 행위는 바우처 서비스로 인정 불가
2. 제공기관은 이용자 모니터링, 제공인력 교육 및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3)

사 례 3

장애인 자녀를 둔 A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000장애인부모회의 기관장으로서 본인의 자녀 B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소속 제공인력 C에게 본인의 자녀 B에게 서비스 없이 결제만 하면서 급여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

또한 기관장 A는 부모회라는 기관 특성 상 장애인 자녀를 둔 제공인력들이 많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제공인력이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바우처 결제 시에는 서비스 계약한 다른 부모(제공인력)의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고 부정행위 방법을 전파한 사실 확인. 관할 지자체는 건전한 바우처 이용을 관리해야하는 제공기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임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폐쇄라는 강경한 처분 실시

중점관리

1.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서 의도적 기망, 사기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행정오류와 수급자 인지 미흡 등 과오수급도 해당
2. 부정수급은 직접적 피해자가 없어 숨은 범죄의 특성을 보이며 형법 상 사기, 횡령과 유사한 범죄이나 사회적으로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4)

초과결제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초과로 결제

사 례 1

제공인력 A는 평소 아동 이용자 B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면서 등하교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월 바우처 시간이 많이 남는 것을 알고 수업시간 중 서비스를 한 것처럼 초과하여 결제. 학교 수업 중 발생한 결제를 시스템으로 탐지하여 부정수급 적발. 수년에 걸친 부정수급으로 제공인력 자격정지, 이용자 서비스 중지되었으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제공기관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점관리

1. 이용자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카드를 자주 분실한다는 이유로 제공인력 임의로 바우처 카드 소지 사례 다수 발생(동의서 징구 시에도 서비스 종료 시 반납 필수)
2. 바우처는 필요 시 사용하는 이용권이므로 월 바우처 전액의 소진 의무는 없으나 제공인력 급여와 직결됨에 따라 전액 소진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5)

사 례 2

현장점검 간 제공인력 A의 교육시간과 서비스 시간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A는 보수교육에 참석하며 교육시간 동안 바우처 결제를 하였고 평소 지적장애인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였음을 확인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출퇴근 시간 등 1~2시간 정도를 이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초과 결제

부정수급은 전액 환수하였으며 제공인력 자격정지 처분

중점관리

1. 보수교육 간 이용자 돌봄은 가족 지원 또는 대체인력을 편성하되 기타 사정으로 해당 제공인력의 돌봄이 불가피하여 이용자와 동행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등 대비하고 교육 간 서비스 결제는 지양할 것을 안내
2. 초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바우처 초과결제 인지에 취약한 이용자의 경우, 제공기관에서는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 필요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6)

담합

가족 간 담합 후 허위결제 및 명의대여

사 례 1

장애 자녀를 둔 부모 A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장애 자녀를 둔 부모 B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0000센터'의 제공 인력으로 등록하고 상대방의 자녀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A와 B는 각자의 자녀를 돌보면서 제공인력 카드를 바꾸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결제 하는 등 치밀하게 부정수급

부정수급 전액 환수, 제공인력 자격정지 및 이용자 서비스 중지 등 행정처분

중점관리

1.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은 이용자 및 제공인력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맡겼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부정수급의 시작점임
2. 제공기관은, 주변인들의 신고, CCTV 확인 등 언제든지 허위결제는 발각될 것임을 지속 안내 및 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7)

사 례 2

클린센터로 허위결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점검 중 피신고인(제공인력)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으나 미소지로 확인이 어려운 중, 제공기관 전담인력이 제공인력 본인이 맞다고 확인해주었으나 본인 확인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하는 등 의심되어 인근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결과, 다른 사람으로 밝혀짐

당초 계약한 제공인력은 건강보험 가입이, 명의 대여자는 급여가 필요하다는 이해 관계가 있었으며 제공기관 전담인력이 허위 제공인력과 친인척 사이로 해당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부정행위에 가담

중점관리

1. 제공기관의 장은 이용자, 제공인력 및 서비스 관리가 가능한 충분한 전담인력 수를 확보해야 하며 부정행위 일선 관리자인 전담인력의 청렴도 향상에 힘써야 함
2.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제공인력, 이용자 등록 시 본인, 가족관계 등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2. 부정수급 사례 및 중점관리 사항(8)

생업지원

활동지원 바우처를 생업 지원에 활용하는 목적 외 이용

사 례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안마사(제공인력)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A는 본인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 B와 안마원으로 출근하면서 시설 청소, 세탁, 고객 안내, 서비스 비용 결제 등 안마원의 고유 업무를 시킴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장애인 이용자의 일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넘어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용자 출퇴근 지원을 제외한 생업지원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중점관리

장애인 이용자의 생업 지원은 근로지원인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임을 제공인력에게 교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생업지원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제2항

3. 바우처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제공기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특히,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용자) 활동급여 제공 제한



특히, 서비스 미제공 후 허위결제, 제공 서비스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활동급여 제공 제한

(제공인력)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자격정지·취소



특히, 서비스 미제공 후 허위결제, 제공 서비스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신고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방법

전 화 : 02)6360-6799

인터넷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상단 클린센터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
타운 17층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6360-6799

신고인 보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비밀누설 금지)에
따라 **신고인 정보**를 포함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 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신고인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드립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치체계

미션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에 기여

비전

국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관

핵심가치

동행과 행복

공정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소통과 협력

경영방침

사람중심
경영

융합 경영

공유 경영

책임 경영

감사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